

제 1104 호
1985. 6. 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관
편집인 : 공보관 조남호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례

| | |
|---|---|
| ◎ 고 시 | |
| 제 362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하수도) 변경지적승인 | 3 |
| 제 363 호 : 마포로계 1 구역계 16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| 3 |
| 제 364 호 : 서초근린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| 4 |
| 제 365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| 4 |
| ◎ 공 고 | |
| 제 324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) 실시계획공람공고 | 5 |
| 제 329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 | 5 |
| ◎ 사 령 | |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공 | | | | | | | | | | |
| 합 | | | | | | | | | | |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서울특별시고시제 362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, 하수도)
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50호(85.5.25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

(도로, 하수도)을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시행령 제 6조 1항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 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 . 6 . 1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 지적승인 조서

| 구분 | 등급 | 유별 | 너비(m) | 길이(m) | 기 점 | 종 점 | 비 고 |
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기정 | 소로 | 3 | 6 | 1,320 | 방학동 289-1 | 방학동 500-2 | |
| 변경 | " | " | " | 1,328 | " | " | 노선연장 L = 8 m |

나.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변경 지적승인 조서

| 구분 | 폭원(m) | 연장(m) | 기 점 | 종 점 | 비 고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정 | 5-6 | 1,035 | 방학동 272-4 | 방학동 213-2 | |
| 변경 | " | " | " | " | 지천사정으로 인한 일부 구간위치 변경 |

서울특별시고시제 363 호

마포로제 1 구역 제 16 지구재개발
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9 호 (83. 4. 15) 로 사업시행인가 된 마포로 제 1 구역 제 16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

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(시행기간 연장)하고 동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.

1985 . 6 . 1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인가 내용
 1. 시행기간: 기정 '83.4.15 - '85.4.30
 변경 '83.4.15 - '85.7.30
 나. 변경이유: 공공용지상의 건물 철거 지연
 다. 기타사항: 변경전 인가 내용과 동일

서울특별시고시제 364 호
 서초근린공원조성계획일부변경
 결정및지적승인

1. 서울시 고시 제 323 호 ('85.5.15)
 로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
 초근린공원 조성계획(문화회관)에 대하

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법 제 4 조와
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
 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
 성계획(문화회관) 일부 변경 결정하고,
 2. 도시계획법 제 13 조 제 2 항 및 동
 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
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 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와
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및 문교부 사
 회교육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
 인다.

1985.6.1.
 서울특별시장

가. 공원조성계획(문화회관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| 구분 | 번호 | 시 설 명 | 위 치 | 부지면적 | 시 설 규 모 | | 비 고 |
|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| 바 닥면적 | 연면적 | |
| 기정 | 32 | 문화회관 | 반포동산 94-4 일대 | 6,610㎡ | - | 1,500㎡ | |
| 변경 | " | " | " | 6,610 | 1,500㎡ | 4,950㎡ | 지하1층 지상3층 |

나. 관계도면: 변경없음.

서울특별시고시제 365 호
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 계획
 인가점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10 호 ('84.8.25)
 로 성동구 광장동 146 의 1 일원 "워커힐

- 시계간 도로확장공사"를 위한 도시계
 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용중
 다음과 같이 건물조서 일부사항이 확
 기재 되었기 이를 정정 고시한다.

1985.6.1.
 서울특별시장

정 정 사 항 (건물조서)

| 구분 | 지 번 | 구 조 | 면 적 | 소 유 자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| | | | 주 소 | 성 명 |
| 변경전 | 성동구광장동 62 | 연외조스라브 | 1층 715㎡ 6층 103㎡ | 강남구 도곡동 영동 아파트 6 동 103 | 송재중 |
| 변경후 | 상 동 | 상 동 | 1층 15㎡ 2층 15㎡ | 상 동 | 송재중 |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)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87 호 (83.3.1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23 호 (84.4.25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봉구 도시계획시설 (불암산 자연공원)에 대하여,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허가에 따른 서류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,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에게 공람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, 일반에게 공람하며, 동 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5. 6. 1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도봉구
공릉동 산 223-19
- 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공원)
- 다. 사업규모 및 권적 :

1) L = 258 m,
B = 3 m (크로스컨트리)

2) 면적 772 ㎡

라. 사업시행자 : 대한체육회장

마. 사업시행기간 :

'85.6.10-'85.12.10 (예정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29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96 호 (76.8.16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과 동 고시 제 350 호 (85.5.25) 및 동 고시 제 362 호 (85.6.1)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로에 대하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한국공항주식회사 (T 663-8621-5)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.

1985. 6. 1.

서울특별시장

| |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 략 개 요</p> <p>1. 사업시행위치 : 강서구방화동 500-3, 6, 11, 12, 15, 502, 770-1, 771.</p> <p>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)</p> | <p>3. 규 모 : 폭 5 m, 길이 135 m</p> <p>4. 사업시행허가 신청자 : 한국공항 주식회사</p> <p>5. 사업기간 : 허가일로부터 1개 년간</p> |
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 margin: 10px 0;">사 령</div> | |

◎ 1985년 6월 1일자

명제 179호

| 성 명 | 발 명 사 항 | 현 부 서 | 직 급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노수만 | 내무국의전과 근무를 명함 |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| 지방행정주사 |

◎ 1985년 6월 1일자

명제 180호

| 성 명 | 발 명 사 항 | 현 부 서 | 직 급 |
|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김재현 | 대법원판결 (사건 84누 684 : 85.4.28)에 의하여 83.6.17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 | 관악구 주택과장 | 지방행정사무관 |
| 김건식 | 대법원판결 (사건 84누 628 : 85.4.23)에 의하여 83.6.17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| 구로구 세무 2 과장 | . |
| 김일섭 | 대법원판결 (사건 84누 675 : 85.5.1)에 의하여 83.6.17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 | (전) 성동구 건설관리과 | 지방행정주사보 |

서울특별시장